

수 신 시·도건축사회 회장
(경유)

제 목 환경부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알림 [알림 2020-024]

1.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건축사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환경부 토양지하수과-2338 (2020.09.11.) 관련입니다.
3. 환경부에서는 「지하수법」에 따라,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중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준공 후 지속 발생 시 이용계획을 수립·신고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.
4. 이에 불임으로 「지하수법」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를 보내드리오니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내용 -

- 가. 신고대상 :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중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* 유출되는 시 또는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* 지속 발생 시
- 나. 신고주체 : 지하철·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(발주자 또는 건축주)
- 다. 신고시기 :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기준 이상의 지하수*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- 라. 관련 법 :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4조의2,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

*지하철 역사, 터널, 전력구 및 통신구 1개소당 지하수가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, 특·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㎡이상인 건축물 1동당 지하수가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

- 붙 임: 1) 환경부 공문 1부.
2) 「지하수법」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부. 끝.

